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수신자 업체(기관·단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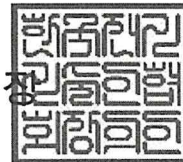
(경유)

제 목 2020년 전기기술인 협회비 납부 안내

1. 귀 업체(기관, 단체)와 회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되어 100만 전기인의 허브로서 국가 전력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전기관련 법령에 따른 정부위탁업무(전력기술인 경력신고,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감리원 배치신고 등)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통해 회원 및 회원사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2020년 새해에도 회원의 권익향상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불임과 같이 귀 업체(기관, 단체)에 소속된 전기기술인의 협회비 납부를 요청하오니, 2020. 2. 28(금)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회원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원로회원께서는 2020. 1. 1. 부터 직무회원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협회비 납부안내서 1부
2. 협회비 지로용지 1부. 끝.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



전결 01/22

★ 과장 김은정 팀장 김기창 처장 전희수

협조자

시행 회원관리팀-57 (2020.1.22.) 접수

우 08805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40 (남현동) 2층

/ <http://www.keea.or.kr>

대표전화 1899-3838 전화 02-2182-0748,0755~9 전송 02-581-4259

/ 공개

협회비납부안내서

□ 회비부과 근거 : 협회 정관 제9조제2항제3호

□ 회비납부 방법

- 방문납부 : 협회 중앙회 및 해당 시·도회 방문하여 납부(현금 또는 신용카드)
- 계좌이체 : 우리은행 142-04-110531(예금주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성명과 생년월일기재)
- 지로납부 : 가까운 금융기관(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하여 별첨된 지로통지서를 이용 납부
- 인터넷납부 : 협회 홈페이지 ⇒ 정보통합센터 ⇒ 마이페이지 ⇒ 회비납부

□ 회비부과 기준

구 분		부 과 기 준	가입비(원)	연회비(원)
직무 회원	설계	설계업자, 설계사, 기술사	100,000	100,000
		설계보조자	70,000	70,000
	감리	감리업자, 특급 및 고급감리원	100,000	100,000
		중급, 초급 감리원	70,000	70,000
	선임	전기안전관리사	100,000	100,000
		전기안전관리원(보조원) 및 기타 기술자	70,000	70,000
대행	전기안전관리사	100,000	100,000	
	전기안전관리원(보조원)	70,000	70,000	
일반 회원	개인	직무회원 이외의 기술자격 취득자	70,000	70,000
	단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각호의 1에 의한 기관 중 단체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소속된 직무회원		

□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안내

1. 온라인 민원서비스 종류

- 회비, 경력관리 수수료 조회 및 납부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 감리원교육 등 교육신청 및 이수현황 조회
- 각종 확인서 발급(경력확인서, 보유확인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증명서 등)
- 각종 신고업무(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감리원배치신고, 설계·감리·대행업 기술인력변경신고, 감리배치 및 변경신고, 감리완료보고, 경력변경신고)
- 각종 신고사항 조회(경력사항, 경력등급, 업체보유인력 등록내역, 감리배치현황,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내역, 각종 신고 및 민원서류 발급내역)

2.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방법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에서 “정보통합센터” 클릭
⇒ 공인인증서(금융기관 발급) 로그인 ⇒ 민원서비스 이용
- 각종민원서류 발급(보증서, 확인서 등) 절차
신청 ⇒ 조회 ⇒ 결제(결제방식 선택/신용카드, 계좌이체) ⇒ 확인서 출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회(회원관리팀, 정보관리팀) 또는 전국 21개 시·도회 문의